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49

발의연월일: 2024. 9. 13.

발 의 자: 송옥주·이해민·권칠승

이수진 · 김남희 · 박해철

추미애 • 이기헌 • 박희승

이병진 · 한정애 · 박 정

한민수 · 박홍배 · 이용우

안태준 • 정을호 • 전종덕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·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, 소방관서장은 동 지구 내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소방설비 등의 설치 및 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최근 발생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로 인한 화재는 기존의 소방시설로는 진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예방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는 한편,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반응성 전지 등 금속 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며, 취급 및 저장 외 이송 기준도 하위 법령

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5항, 제18조제1항 제10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5항 중 "및 목탄"을 "·목탄 및 금속류(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를 포함한다)"로, "및 취급"을 "·취급 및 이송"으로 한다. 제18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하며, 같은 항 제11호(종전의 제10호) 중 "제9호까지에"를 "제10호까지에"로 한다.

10.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화재의 예방조치 등) ①	제17조(화재의 예방조치 등) ①
~ ④ (생 략)	~ ④ (현행과 같음)
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	5
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・플	
라스틱류·석탄 <u>및 목탄</u> 등 대	<u>·</u> 목탄 및 금속류
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	(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
(特殊可燃物)의 저장 <u>및 취급</u>	<u>를 포함한다)</u>
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	<u>·</u> 취급 및 이송
제18조(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	제18조(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
등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	<u>두</u>) ①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	
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	
하여 관리할 수 있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0.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
	<u>공장이 있는 지역</u>
<u>10.</u> 그 밖에 제1호부터 <u>제9호까</u>	<u>11.</u> <u>제10호</u>
<u>지에</u>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	<u>까지에</u>
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	
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	
인정하는 지역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